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3호 2010. 8. 4. (수)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106호 초지조성 지구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0-112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3
- 정선군고시 제2010-115호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이의신청 지가 조정 결정 고시..... 4
- 정선군고시 제2010-116호 정선군 택시요금 운임 요율 결정사항 고시 ..... 10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415호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자 청문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3
- 정선군공고 제2010-417호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5
- 정선군공고 제2010-419호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5차 공고 .. 20
- 정선군공고 제2010-424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0 -106호

초지조성 지구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초지조성 지구 해제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7. 23.  
정 선 군 수

- 붙임 1. 초지조성 지구지정(해제) 고시 대상 필지별 내역 1부.
- 2. 지형도면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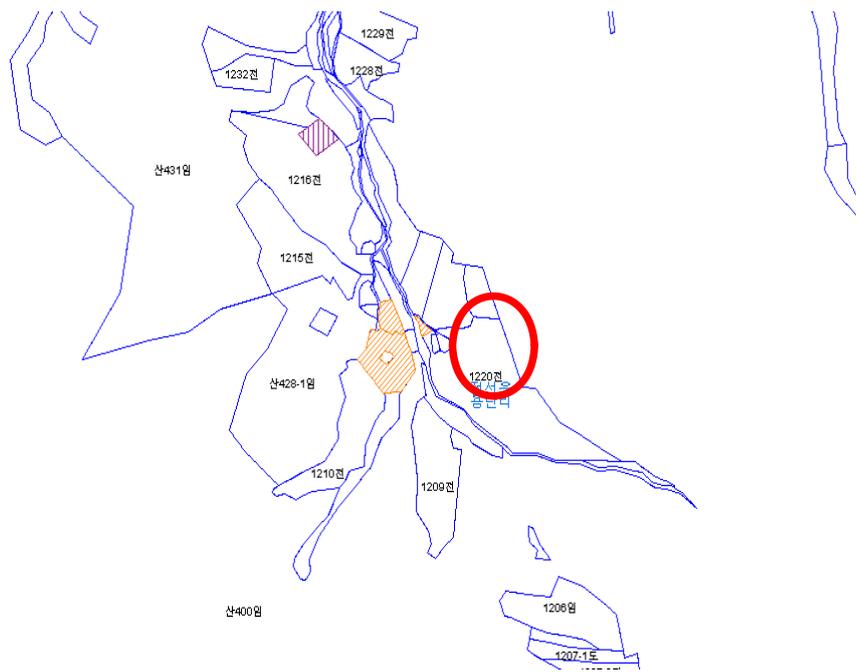
□ 초지해제(고시) 내역

| 초지조성 허가현황(ha) |      |    |      |      | 고시면적<br>(해제) | 토지 소유자      |     | 허가자         |     | 초지조성<br>완료일 | 비고 |
|---------------|------|----|------|------|--------------|-------------|-----|-------------|-----|-------------|----|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허가면적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               | 2필   |    | 2.25 | 2.25 | 2.25         |             |     |             |     |             |    |
| 정선읍<br>용탄리    | 1222 | 임  | 0.21 | 0.21 | 0.21         | 정선읍<br>용탄3리 | 권용섭 | 정선읍<br>용탄2리 | 이영진 | '84.11.30   |    |
| “             | 1220 | 임  | 2.04 | 2.04 | 2.04         | “           | “   | “           | “   | '84.11.30   |    |

□지형도면



□지적도면



## 정선군고시 제2010-112호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80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7. 27.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 회계별          | 구분 |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 증감율     |
|--------------|----|-------------|-------------|------------|---------|
| 총 계          |    | 336,195,248 | 301,688,378 | 34,506,870 | 11.44%  |
| 일반회계         |    | 302,148,830 | 268,708,529 | 33,440,301 | 12.44%  |
| 기타특별회계       |    | 25,552,406  | 24,671,869  | 850,537    | 3.45%   |
|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    | 341,719     | 323,793     | 17,926     | 5.54%   |
| 의료급여기금       |    | 586,291     | 562,444     | 23,847     | 4.24%   |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    | 41,987      | 41,987      | 0          | 0.00%   |
| 기반시설부담금      |    | 568,895     | 572,925     | △4,030     | △0.70%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    | 623,068     | 600,000     | 23,068     | 3.84%   |
| 주택사업         |    | 130,121     | 110,196     | 19,925     | 18.08%  |
| 주차장          |    | 641,479     | 782,137     | △140,658   | △17.98% |
| 수질개선         |    | 22,588,846  | 21,678,387  | 910,459    | 4.20%   |
| 상수도사업        |    | 8,524,012   | 8,307,980   | 216,032    | 2.60%   |

정선군고시 제2010-115호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조정된 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0. 07. 29.

정 선 군 수

□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이의신청지가 조정 고시

- 1. 고시(가격)기준일 : 2010년 1월 1일
- 2. 이의신청 조정필지 : 정선읍 봉양리 358-8번지 외 113필지
- 3.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sup>2</sup>)당 가격(원)
- 4.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고시 내역

(단위:원/m<sup>2</sup>)

| 심의<br>번호 | 토지소재지 |     |       | 토 지 현 황 |        | 전년지가    | 결정지가    | 이의<br>신청<br>요지 | 조정내용<br>(검증내용) | 조정<br>결정·고시<br>가격 |
|----------|-------|-----|-------|---------|--------|---------|---------|----------------|----------------|-------------------|
|          | 법정동   | 리 별 | 지 번   | 지목      | 면적     |         |         |                |                |                   |
| 1        | 정선읍   | 봉양리 | 358-8 | 전       | 139    | 218,000 | 199,000 | 상향             | 상향             | 218,000           |
| 2        |       | 애산리 | 536-1 | 대지      | 1,266  | 94,200  | 89,200  | 상향             | 상향             | 106,000           |
| 3        |       | 신월리 | 125   | 전       | 995    | 0       | 5,130   | 상향             | 상향             | 5,400             |
| 4        |       | 신월리 | 125-1 | 전       | 787    | 0       | 5,130   | 상향             | 상향             | 5,400             |
| 5        |       | 신월리 | 125-2 | 전       | 661    | 0       | 5,130   | 상향             | 상향             | 5,400             |
| 6        |       | 신월리 | 125-3 | 전       | 519    | 0       | 5,130   | 상향             | 상향             | 8,200             |
| 7        |       | 덕우리 | 57    | 임야      | 4,185  | 3,880   | 7,380   | 하향             | 하향             | 3,880             |
| 8        |       | 회동리 | 539   | 전       | 6,754  | 768     | 788     | 상향             | 상향             | 1,800             |
| 9        |       | 회동리 | 542   | 전       | 20,505 | 752     | 772     | 상향             | 상향             | 1,800             |
| 10       |       | 회동리 | 546   | 전       | 14,568 | 760     | 781     | 상향             | 상향             | 1,800             |
| 11       |       | 회동리 | 548   | 전       | 18,394 | 2,360   | 2,410   | 상향             | 적정             | 2,410             |
| 12       |       | 회동리 | 555   | 전       | 1,957  | 812     | 842     | 상향             | 상향             | 1,800             |
| 13       |       | 회동리 | 558   | 전       | 3,745  | 760     | 781     | 상향             | 상향             | 1,800             |
| 14       |       | 회동리 | 561   | 전       | 5,265  | 760     | 781     | 상향             | 상향             | 1,800             |
| 15       |       | 회동리 | 563   | 임야      | 1,580  | 1,740   | 1,800   | 상향             | 적정             | 1,800             |
| 16       |       | 회동리 | 566   | 전       | 2,945  | 776     | 797     | 상향             | 상향             | 1,800             |
| 17       |       | 회동리 | 568   | 전       | 863    | 1,900   | 1,800   | 상향             | 적정             | 1,800             |
| 18       |       | 회동리 | 570   | 전       | 3,256  | 776     | 797     | 상향             | 상향             | 1,800             |
| 19       |       | 회동리 | 572   | 전       | 3,481  | 1,900   | 1,800   | 상향             | 적정             | 1,800             |
| 20       |       | 회동리 | 573   | 전       | 1,451  | 812     | 842     | 상향             | 상향             | 1,800             |
| 21       |       | 회동리 | 574   | 전       | 1,289  | 812     | 842     | 상향             | 상향             | 1,800             |
| 22       |       | 회동리 | 576   | 전       | 5,270  | 811     | 841     | 상향             | 상향             | 1,800             |
| 23       |       | 회동리 | 577   | 전       | 10,860 | 811     | 841     | 상향             | 상향             | 1,800             |
| 24       |       | 용탄리 | 49-2  | 전       | 1,878  | 4,510   | 4,410   | 상향             | 상향             | 4,700             |
| 25       |       | 용탄리 | 134   | 전       | 715    | 3,600   | 3,580   | 상향             | 적정             | 3,580             |
| 26       |       | 용탄리 | 136   | 전       | 545    | 3,200   | 3,200   | 상향             | 적정             | 3,200             |
| 27       |       | 용탄리 | 747-5 | 전       | 1,699  | 6,230   | 6,140   | 상향             | 적정             | 6,140             |

| 심의<br>번호 | 토지소재지 |      |         | 토 지 현 황 |        | 전년지<br>가 | 결정지가    | 이의신청<br>요지 | 조정내용<br>(검증내용) | 조정<br>결정. 고시<br>가격 |
|----------|-------|------|---------|---------|--------|----------|---------|------------|----------------|--------------------|
|          | 법정동   | 리 별  | 지 번     | 지목      | 면적     |          |         |            |                |                    |
| 28       | 정선읍   | 용탄리  | 748-2   | 전       | 933    | 8,050    | 8,070   | 상항         | 적정             | 8,070              |
| 29       |       | 용탄리  | 751     | 전       | 2,003  | 6,230    | 6,140   | 상항         | 상항             | 6,550              |
| 30       |       | 용탄리  | 752     | 전       | 2,264  | 6,230    | 6,140   | 상항         | 적정             | 6,140              |
| 31       |       | 용탄리  | 789-2   | 전       | 2,233  | 6,000    | 5,900   | 상항         | 적정             | 5,900              |
| 32       |       | 용탄리  | 790     | 대지      | 198    | 8,110    | 8,110   | 상항         | 상항             | 8,550              |
| 33       |       | 용탄리  | 791     | 전       | 3,312  | 5,340    | 5,250   | 상항         | 상항             | 5,600              |
| 34       |       | 용탄리  | 796     | 전       | 764    | 6,130    | 6,140   | 상항         | 적정             | 6,140              |
| 35       |       | 용탄리  | 798     | 답       | 3,172  | 6,900    | 6,900   | 상항         | 적정             | 6,900              |
| 36       |       | 용탄리  | 803     | 전       | 2,598  | 5,340    | 5,250   | 상항         | 상항             | 5,600              |
| 37       |       | 용탄리  | 805     | 전       | 4,182  | 6,060    | 5,950   | 상항         | 적정             | 5,950              |
| 38       |       | 용탄리  | 806     | 전       | 2,136  | 6,900    | 6,900   | 상항         | 적정             | 6,900              |
| 39       |       | 용탄리  | 808-1   | 대지      | 660    | 0        | 8,510   | 상항         | 상항             | 9,000              |
| 40       |       | 용탄리  | 808-2   | 전       | 294    | 6,060    | 5,950   | 상항         | 적정             | 5,950              |
| 41       |       | 용탄리  | 809     | 전       | 1,207  | 6,060    | 5,950   | 상항         | 적정             | 5,950              |
| 42       |       | 용탄리  | 935-1   | 전       | 4,582  | 5,320    | 5,200   | 하항         | 적정             | 5,200              |
| 43       |       | 광하리  | 56-4    | 전       | 435    | 19,800   | 19,800  | 상항         | 적정             | 19,800             |
| 44       |       | 광하리  | 67      | 전       | 177    | 19,800   | 19,800  | 상항         | 적정             | 19,800             |
| 45       |       | 광하리  | 276     | 전       | 4,440  | 7,840    | 7,650   | 상항         | 상항             | 7,840              |
| 46       |       | 광하리  | 1047    | 전       | 4,805  | 4,840    | 4,750   | 상항         | 상항             | 5,000              |
| 47       |       | 굴암리  | 56-5    | 임야      | 2,698  | 1,530    | 489     | 상항         | 상항             | 1,480              |
| 48       | 굴암리   | 56-8 | 임야      | 2,142   | 1,530  | 489      | 상항      | 상항         | 1,200          |                    |
| 49       | 고한읍   | 고한리  | 62-73   | 대지      | 60     | 856,000  | 866,000 | 상항         | 적정             | 866,000            |
| 50       |       | 고한리  | 62-267  | 대지      | 27     | 280,000  | 283,000 | 상항         | 상항             | 866,000            |
| 51       |       | 고한리  | 85-25   | 대지      | 51     | 478,000  | 488,000 | 상항         | 상항             | 512,000            |
| 52       | 사북읍   | 사북리  | 284-20  | 전       | 1,263  | 100,000  | 126,000 | 하항         | 적정             | 126,000            |
| 53       |       | 사북리  | 356-220 | 전       | 38     | 526,000  | 528,000 | 하항         | 하항             | 370,000            |
| 54       | 신동읍   | 예미리  | 409-1   | 전       | 14,765 | 4,200    | 4,000   | 하항         | 적정             | 4,000              |
| 55       |       | 예미리  | 409-2   | 전       | 15,208 | 4,200    | 4,000   | 하항         | 적정             | 4,000              |
| 56       |       | 예미리  | 409-3   | 전       | 5,433  | 4,200    | 4,000   | 하항         | 적정             | 4,000              |

| 심의<br>번호 | 토지소재지 |     |        | 토 지 현 황 |        | 전년지<br>가 | 결정지가    | 이의신청<br>요지 | 조정내용<br>(검증내용) | 조정<br>결정. 고시<br>가격 |        |
|----------|-------|-----|--------|---------|--------|----------|---------|------------|----------------|--------------------|--------|
|          | 법정동   | 리 별 | 지 번    | 지목      | 면적     |          |         |            |                |                    |        |
| 57       | 신동읍   | 예미리 | 409-4  | 전       | 4,681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58       |       | 예미리 | 409-5  | 전       | 4,780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59       |       | 예미리 | 409-6  | 전       | 2,705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0       |       | 예미리 | 409-7  | 전       | 1,060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1       |       | 예미리 | 409-8  | 전       | 3,692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2       |       | 예미리 | 409-10 | 전       | 6,560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3       |       | 예미리 | 409-11 | 전       | 6,735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4       |       | 예미리 | 409-12 | 전       | 7,117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5       |       | 예미리 | 409-13 | 전       | 5,189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6       |       | 예미리 | 409-14 | 전       | 3,028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7       |       | 예미리 | 409-15 | 전       | 1,692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8       |       | 예미리 | 409-17 | 전       | 5,067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69       |       | 예미리 | 409-18 | 전       | 21,266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0       |       | 예미리 | 409-19 | 전       | 7,649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1       |       | 예미리 | 409-20 | 전       | 21,629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2       |       | 예미리 | 409-21 | 전       | 2,500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3       |       | 예미리 | 409-22 | 전       | 2,709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4       |       | 예미리 | 409-23 | 전       | 2,102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5       |       | 예미리 | 409-24 | 전       | 4,151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6       |       | 예미리 | 409-25 | 전       | 3,737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7       |       | 예미리 | 409-26 | 전       | 6,612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8       |       | 예미리 | 409-27 | 전       | 3,331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79       |       | 예미리 | 409-28 | 전       | 4,832  | 4,200    | 4,000   | 하향         | 적정             | 4,000              |        |
| 80       |       |     | 가사리    | 192-10  | 잡종지    | 4,961    | 35,700  | 39,600     | 하향             | 하향                 | 24,700 |
| 81       |       |     | 고성리    | 41      | 전      | 1,408    | 4,470   | 4,470      | 상향             | 상향                 | 5,110  |
| 82       |       | 화암리 | 화암리    | 396-14  | 대지     | 233      | 102,000 | 95,400     | 상향             | 적정                 | 95,400 |
| 83       |       |     | 화암리    | 396-15  | 전      | 982      | 77,700  | 60,200     | 상향             | 상향                 | 67,300 |
| 84       |       |     | 화암리    | 1199    | 대지     | 565      | 11,100  | 11,800     | 하향             | 하향                 | 5,240  |

| 심의<br>번호 | 토지소재지 |     |        | 토 지 현 황 |        | 전년지가    | 결정지가    | 이의신청<br>요지 | 조정내용<br>(검증내용) | 조정<br>결정·고시<br>가격 |        |
|----------|-------|-----|--------|---------|--------|---------|---------|------------|----------------|-------------------|--------|
|          | 법정동   | 리 별 | 지 번    | 지목      | 면적     |         |         |            |                |                   |        |
| 85       | 화암면   | 석곡리 | 514-4  | 하천      | 69     | 1,910   | 1,940   | 상향         | 적정             | 1,940             |        |
| 86       |       | 석곡리 | 531-2  | 하천      | 112    | 1,910   | 1,940   | 상향         | 적정             | 1,940             |        |
| 87       |       | 몰운리 | 207-3  | 전       | 906    | 2,570   | 2,540   | 상향         | 적정             | 2,540             |        |
| 88       |       | 호촌리 | 54     | 임야      | 18,258 | 405     | 405     | 상향         | 적정             | 405               |        |
| 89       |       | 호촌리 | 62     | 임야      | 7,970  | 401     | 401     | 상향         | 적정             | 401               |        |
| 90       | 남 면   | 무릉리 | 608-9  | 전       | 350    | 290,000 | 302,000 | 하향         | 적정             | 302,000           |        |
| 91       |       | 낙동리 | 528-6  | 전       | 18,695 | 7,990   | 8,610   | 상향         | 적정             | 8,610             |        |
| 92       | 여량면   | 유천리 | 330    | 전       | 3,560  | 9,140   | 9,850   | 하향         | 하향             | 9,180             |        |
| 93       |       | 유천리 | 368    | 전       | 2,476  | 9,140   | 9,850   | 하향         | 하향             | 8,070             |        |
| 94       |       | 유천리 | 385-8  | 대지      | 575    | 14,200  | 15,700  | 하향         | 하향             | 14,800            |        |
| 95       |       | 유천리 | 385-13 | 대지      | 512    | 19,000  | 21,000  | 하향         | 적정             | 21,000            |        |
| 96       |       | 유천리 | 385-29 | 답       | 622    | 12,400  | 13,400  | 하향         | 적정             | 13,400            |        |
| 97       |       | 유천리 | 385-32 | 대지      | 182    | 18,000  | 19,900  | 하향         | 적정             | 19,900            |        |
| 98       |       | 유천리 | 385-33 | 전       | 310    | 11,400  | 12,200  | 하향         | 하향             | 11,300            |        |
| 99       |       | 유천리 | 399    | 답       | 208    | 10,000  | 10,700  | 하향         | 하향             | 10,200            |        |
| 100      |       | 유천리 | 산187-1 | 임야      | 1,950  | 162     | 172     | 하향         | 적정             | 172               |        |
| 101      |       | 구절리 | 251-1  | 대지      | 895    | 16,700  | 14,000  | 상향         | 상향             | 24,000            |        |
| 102      |       | 구절리 | 277-18 | 대지      | 54     | 25,200  | 27,900  | 상향         | 상향             | 31,200            |        |
| 103      |       | 북평면 | 남평리    | 1294-1  | 대지     | 486.5   | 68,000  | 70,000     | 하향             | 적정                | 70,000 |
| 104      |       |     | 남평리    | 산139    | 임야     | 143,108 | 269     | 376        | 하향             | 하향                | 317    |
| 105      | 나전리   |     | 424-2  | 전       | 2,645  | 11,000  | 12,700  | 하향         | 적정             | 12,700            |        |
| 106      | 나전리   |     | 426-4  | 전       | 662    | 14,200  | 14,200  | 하향         | 적정             | 14,200            |        |
| 107      | 임계면   | 직원리 | 524-67 | 전       | 1,326  | 9,580   | 9,320   | 상향         | 적정             | 9,320             |        |
| 108      |       | 송계리 | 894    | 답       | 1,008  | 7,500   | 7,800   | 하향         | 적정             | 7,800             |        |
| 109      |       | 봉산리 | 588-1  | 전       | 2,938  | 6,680   | 7,090   | 하향         | 적정             | 7,090             |        |
| 110      |       | 봉산리 | 588-2  | 전       | 1,068  | 6,680   | 7,090   | 하향         | 적정             | 7,090             |        |
| 111      |       | 문래리 | 232    | 하천      | 1,060  | 10,400  | 10,700  | 하향         | 하향             | 10,100            |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내역

(단위:원/m<sup>2</sup>)

| 토지소재지 |     |       | 지목 | 년도<br>기준일 | 결정가격   | 정정내용   | 부동산평가위원회 |      | 정정<br>결정·고시<br>가격 |
|-------|-----|-------|----|-----------|--------|--------|----------|------|-------------------|
| 법정동   | 리별  | 지 번   |    |           |        |        | 심의가격     | 심의결과 |                   |
| 북평면   | 속암리 | 602   | 전  | 2010      | 47,300 | 토지특성오류 | 30,300   | 원안통과 | 30,300            |
|       | “   | 606   | 전  | 2010      | 47,300 | “      | 30,300   | “    | 30,300            |
|       | “   | 606-1 | 전  | 2010      | 47,300 | “      | 30,300   | “    | 30,300            |

## 정선군고시 제2010-116호

## 정선군 택시요금 운임 요율 결정사항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소형 및 경형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010. 07. 30.  
정 선 군 수

## 1. 목 적

본 고시는 2010. 07. 31. 00:00시부터 적용되는 정선군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에 대하여 택시 이용자와 요금 시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객운수사업 확립

## 2. 적용요금

○ 강원도 소형 및 경형택시 운임·요율의 적용 시행

| 구 분                       | 기 결정       | 금회 결정      |               | 비 고  |
|---------------------------|------------|------------|---------------|--|
|                           | 중형택시       | 소형택시       | 경형택시          |  |
| 기본운임<br>(2km까지)           | 2,200원     | 2,000원     | 1,700원        |  |
| 거리운임                      | 165m당 100원 | 185m당 100원 | 225m당<br>100원 | 주행속도와 관계없음   |
| 시간운임<br>(15km이하<br>주행시/h) | 40초당 100원  | 45초당 100원  | 53초당 100원     | 도시지역 시속 15km<br>이하 주행시 소요시간<br>이 길어 소요시간에<br>따라 적용 |

○ 할증요금 : 아래 3. 할증요금 적용“과 같이 시행

## 3. 할증요금 적용

가. 상기 복합할증구간 요(공차)율은 빈차로 돌아올 것을 예상한 요율로서 승차한 지점에서 목표지점을 경유하여 하차시까지 최초 승차 고객이 특정한 사정 없이 일정시간을 지속적으로 승차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함(공차가 발생하지 않음)

면 복합할증요율 적용을 할 수 없음)

- 나. 정선군 택시 복합 할증 구간 요(공차)율은 기존 고시된 아래 “표1” 정선군 택시 복합 할증 구간 요(공차)율을 적용하며, 세부구간별 복합할증요(공차)율 기점은 “표 2”를 적용한다
- 다. 귀로 운행시에는 미터기요금만 적용(강원랜드⇒고한·사북읍 등)
- 라. 심야운행 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0:00~04:00시간대 운행시 미터요금의 20% 할증
- 마. 군(郡) 경계 외 할증 : 사업구역 외 운행시 70% 할증
- 바. 비포장구간은 복합할증율 20% 별도적용
- 사. 호출사용료 : 호출장치를 부착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1,000원의 호출사용료 별도 적용 가능
- 아. 요금 산출시 100원단위 미만은 수수치 않음
- 자. 할증지역의 경우 할증 구간임을 반드시 고지한 후 운행

4. 적용일 : 2010. 07. 31. 00:00시

“ 표 1 ”

정선군 택시 복합할증구간 요(공차)율

| 읍면별 | 적용구간  | 할증율 (%) | 읍면별 | 적용구간                   | 할증율 (%) |
|-----|---|---------|-----|------------------------|---------|
| 정선읍 | ◦복합할증율 미적용 :<br>보양리, 북실리, 역전, 병목, 언네        | 미터요금    | 신동읍 | ◦복합할증 미적용 :<br>예미~함백구간 | 미터요금    |
|     | ◦위 구간외 전지역                                  | 63      |     | ◦위 구간외 전지역             | 63      |
| 고한읍 | ◦복합할증율 미적용 :<br>고한~사북 시내구간                  | 미터요금    | 동 면 | ◦동면 전지역                | 63      |
|     | ◦위 구간외 전지역                                  | 63      | 남 면 | ◦남면 전지역                | 63      |
| 사북읍 | ◦복합할증 미적용 :<br>사북~고한 시내구간,<br>도사곡APT, 영동APT | 미터요금    | 북 면 | ◦북면 전지역                | 63      |
|     |   |         | 북평면 | ◦북평면 전지역               | 63      |
|     | ◦위 구간외 전지역                                  | 63      | 임계면 | ◦임계면 전지역               | 63      |

“ 표 2 ”

세부 구간별 복합할증요(공차)을 적용 기점

| 구 분 | 구 간 별                  |             | 복 합<br>할증율 | 비 고                             |
|-----|------------------------|-------------|------------|---------------------------------|
|     | 할증율 적용기점               | 종점          |            |                                 |
| 정선읍 | 덕송리(적거리입구)             | 북평면 방향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관문주유소 앞                | 회동,평창 방향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정선역광장                  | 개끝 방향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진성주유소                  | 고한읍, 동면 방향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고한읍 | 고한여고                   | -           | 63%        | <b>※고한아파트는<br/>미터기 요금만 수수</b>   |
|     | 상갈래(한흥공업사앞 교량)         | 두문동, 소두문동   | 63%        | 태백시 운행: 70%                     |
|     | 상갈래(정암사방면 첫번째<br>철교아래) | 만항, 정암사,부금소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남부주민(주)위 강원랜드입구        | 강원랜드        | 63%        | <b>밸리콘도 스키장은<br/>미터기 요금만 수수</b> |
|     | 새마을(막골입구)              | 강원랜드 골프텔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고토일 입구(구.<br>영창제재소앞)   | 고토일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사북읍 | 사북1리 화장장 (납골당)<br>입구교량 | 백전방향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사북5리 舊동원탄좌<br>경비실 입구   | 강원랜드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남면 경계 교량               | 멀미,증산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직전 입구(그린세차장 밑)         | 직전, 동면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신동읍 | 길운삼거리                  | 안길운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안경다리(함백)               | 방제리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예미역                    | 천포리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     | 예미역                    | 가사리,남면방향    | 63%        | 귀로시 미터요금                        |

※예) 강원랜드⇒고한읍·사북읍 귀로시 미터요금을 적용하며, 미터요금 구간을  
경유하여 복합할증구간(고토일, 남면 등) 으로 운행시 복합할증요율 적용

## 정선군공고 제2010-415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자 청문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청문대상자 및 대상농지

| 농지소재지 |    |    |                     |    |       | 전용 허가자         |     |               |   | 반송사유 |
|-------|----|----|---------------------|----|-------|----------------|-----|---------------|---|------|
| 군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전용목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정선    | 남면 | 유평 | 432-4<br>번지외1<br>필지 | 전  | 4,576 | 주유소<br>및<br>식당 | 유환철 | 611009-1*****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br>394 하송 4주공 아파트<br>406동906호 | 이사감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농지법 제39조 제5호(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지전용허가 취소
5. 청 문 일 : 2010. 08. 09(월) 15:00 ~ 16:00
6. 청문장소 : 정선군청 청문감사실
7. 공고기간 : 2010. 07. 22 ~ 2010. 08. 09 (15일 이상)
8. 기타사항 : 위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지담당 (☎033-560-2377)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0. 07. 22

정 선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 417호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07. 23.

정 선 군 수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의거 “질서위반행위”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전화 560-2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부.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1991. 04. 13 조례 제1480호)

개정(2001. 04. 18 조례 제18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 <삭제 2001.04.18>

제4조 <삭제 2001.04.18>

제5조(부과등) ① <삭제 2001.04.18>

②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01.04.18>

⑤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1.04.18>

제7조(납부독촉) 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 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1.04.18>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호적법

호적법은 이를 폐지한다.(법률 제8435호 / 폐지 2007.05.17)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2조의 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34조 (벌칙)

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①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 ②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③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선군공고 제2010-419호

##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5차 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제안을 받았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하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 07. 27.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10. 7.27. ~ 2010. 8. 31.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m<sup>2</sup>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의 6동 7,762.4m<sup>2</sup>

##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방안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 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3) 부지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회사 재무재표 등 재무상황 근거자료)

## 나. 접 수

- (1) 방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2) 우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438)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확정된 안 통보

6. 재산권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

※ 2009년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 약 80억원

7.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 첨부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현황 1부(정선군 홈페이지 참조).  
2.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1부.

-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활용방안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비고 |
|----------|--|----|
| 개발사업계획   | ○ 개발사업 구상의 적정성<br>-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과의 적정성<br>- 계획의 참신성, 사업의 가능성                                  |    |
|          |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br>-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등  |    |
|          | ○ 년차별 투자계획<br>- 투자계획과 공정비율의 정확도  |    |
| 사업관리운영계획 | ○ 사업관리 능력<br>- 해당사업 참여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br>- 관리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
|          | ○ 시설운영계획<br>- 운영방법<br>- 환경관리 계획  |    |
| 재원조달능력   | ○ 신청자의 능력<br>- 신청자(법인)의 재무 상태<br>- 법인의 경우(전체 출자자의 재무상태)<br>- 지역주민 및 지역법인 참여 비율                   |    |
|          | ○ 자기자본 조달계획<br>- 총투자비 중 자기자본 비율<br>- 자기자본 조달의 확실성  |    |
|          |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타인자본 조달시 계획)<br>- 자금차입의 확실성(MOU 체결 등)  |    |
|          |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br>-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확보 계획  |    |
| 지역경제기여도  | ○ 지역주민 지원<br>- 총 고용인원, 지역주민 고용계획<br>- 지역상품 구매계획  |    |
|          | ○ 지역사회 지원계획<br>-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공사 도급계획<br>- 당해사업의 지역내 투자계획<br>-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br>-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    |

## 정선군공고 제2010-424호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8. 02.

정 선 군 수

##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 2. 행정예고취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이전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3. 설치장소

| 읍 면 별 | 설 치 위 치     | 지 번         | 비 고 |
|-------|-------------|-------------|-----|
| 사북읍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 사북리 345-2 선 |     |

##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인근 주민은 2010년 08월 21일까지 정선군수(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33-560-2336(Fax 560-2589)

- E-mail : werenkp@korea.kr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2. 의견내용

3.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08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